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하



여수시 조례 제2301호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관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로 한다.

제3조(「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전라남도 예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으로, “전라남도 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정부·도”를 “정부·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국·도비”를 “국비·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비·도비”를 각각 “국비·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6조(「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도비”를 “국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8조(「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남도회의의원”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9조(「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1조(「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전단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전라남도와의 협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리도의 적용범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7조(「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의 개정)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표 1의 입장료 감경의 대상자란 제6호 중 “전라남도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한다.

제20조(「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한다.

제21조(「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2조(「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4조(「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5조(「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6조(「여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7조(「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8조(「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라남도 의회(이하 “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을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의”를 “통합특별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 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제29조(「여수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로 한다.

제30조(「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1조(「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2조(「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3조(「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5조(「여수시 건축 조례」의 개정)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6조(「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7조(「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2.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u>전라남도관리</u>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u> ----- -----

3.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u>전라남도지사</u> (이하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하 “통합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
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
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
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
보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
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특별시장 이-----.

③ -----

----- 통합특별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통합특별시장-----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합특별시장-----.

③ (현행과 같음)

④ -----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통합특별시장 -----
-----.

1. ~ 3. (현행과 같음)

4.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u>전라남도 예산</u> 이 지원될 경우 <u>전라남도 내</u>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2. -----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u>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정지원 분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u>전라남도지사</u> 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분담)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u> ----- -----.

5.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부금 등”이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u>전라남도</u> 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 타당성	2. -----
가. 지정 주요 정책사업 및 <u>정부·도</u> 사업과의 연계성	가. ----- <u>정부·통합특별시</u>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재정협의	4. -----
가. <u>국·도비</u> 의 재원 비율 적정성	가. <u>국비·통합특별시비</u>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① ----- ----- ----- ----- ----- ----- -----
1. 여수시가 신청하는 <u>국비·도비</u>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1. ----- <u>국비·통합특별시비</u> ----- ----- ----- -----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u>국비·도비</u>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 ----- <u>국비·통합특별시비</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6.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 및 <u>전라남도</u> 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2.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3. ~ 26. (생략)	3. ~ 26. (현행과 같음)

7.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하되, 1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3. 전액 <u>국·도비</u> 보조사업 용역 4. 5. (생략) ② (생략)	제4조(심의대상)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국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u> ----- ---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전라남도의회의원</u>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1.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u> -----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전라남도의회</u> 의원 해 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u> <u>회 의원</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 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 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却下) 결정된 경우는 고충민원의 대상 으로 한다.	제8조(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또 는 <u>전라남도지사</u> 의 지시에 따 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3.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 · 통지 등) ① · ② (생 략)	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 · 통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③ ----- ----- ----- ----- <u>전남광주통</u>

따라 <u>전라남도지사가</u>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u>전라남도지사</u>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u>합특별시장이</u>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10.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u>전라남도</u>,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11.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관외자(사망일 현재 <u>전라남도</u>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	제9조(사용자격)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19. 10. 14., 2025. 6. 30.>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2.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u>전라남도</u>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13.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전라남도와의 협력)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u>전라남도</u> 와 행정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한다.	제18조(전라남도와의 협력)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14.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용범위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용범위
아스팔트포장도로	A-A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40cm	국도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포장도로	A-A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40cm	국도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B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30cm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B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30cm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C	표층 5cm 기층 15~20cm	지선도로		A-C	표층 5cm 기층 15~20cm	지선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C-A	표층 20cm 보조기층 20cm	폭 6m 이상	콘크리트포장도로	C-A	표층 20cm 보조기층 20cm	폭 6m 이상
	C-B	표층 15cm 보조기층 15cm	폭 6m 미만도로		C-B	표층 15cm 보조기층 15cm	폭 6m 미만도로
보도	일반 보도블럭	보도블럭표층 6cm 모래 3cm	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보도	일반 보도블럭	보도블럭표층 6cm 모래 3cm	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 블럭표층 6cm 모래 3cm	"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 블럭표층 6cm 모래 3cm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cm 물탈 (1:3) 3cm 콘크리트기초 5cm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cm 물탈 (1:3) 3cm 콘크리트기초 5cm	"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표층 10cm 모래 5cm	"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표층 10cm 모래 5cm	"
	기타	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		기타	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
	사리도		전라남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사리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15.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 신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u>전라남도지사</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등록 신청) ① ----- -----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장</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6.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 7. (생략)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7.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생략) ② 자연휴양림은 <u>전라남도</u> 여수시 돌산읍 대북길 160 일원에 둔다.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18.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u>전라남도</u> 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19.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라 한다)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u>전라남도</u> 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②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② -----

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

[별표 1]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

구분 (감면범위)	대 상 자
입장료 면제	1. 여수시 섬주민* * 섬주민의 범위는 [별표2]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5. 75세 이상인 사람 6. 6세 이하 아동 7. 단체인솔자(1인), 여행사 가이드(2인), 기사(1인) 8.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인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감경 (100분의 50범위 내)	1. 여수시민 2.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3. 현역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구 6. 전라남도민(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포함) 7. 자매도시 및 남해안남중권 도시 주민 8.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장료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

구분 (감면범위)	대 상 자
입장료 면제	1. 여수시 섬주민* * 섬주민의 범위는 [별표2]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5. 75세 이상인 사람 6. 6세 이하 아동 7. 단체인솔자(1인), 여행사 가이드(2인), 기사(1인) 8.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인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감경 (100분의 50범위 내)	1. 여수시민 2.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3. 현역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구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전남광주통합시민증 소지자 포함) 7. 자매도시 및 남해안남중권 도시 주민 8.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장료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0.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세 -----. 2. ~ 5. (현행과 같음)

21.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u>전라남도</u> 의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22.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로부터 여수시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 7. (생략) 8.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가</u> <u>고시한 전라남도</u>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기준 지역을 말한다. 9. ~ 11.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 2. ~ 7. (현행과 같음) 8.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u>고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9. ~ 11. (현행과 같음)

23.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u>전라남도·여수시</u> (이하 “시”라 한다)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u> ----- ----- -----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생략) ② 시는 <u>전라남도</u> 와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제9조(보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u>전라남도</u> 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24.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생략)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u>도지사</u>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장</u> -----.

25.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u>전라남도지사</u>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26. 여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 ----- -----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u>전라남도</u>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27.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u>전라남도</u>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28.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

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와 전라남도 (이하 “도 “라 한다) 위임사무 중 국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제12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제6조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 통합특별시의 -----

-.

② -----
통합특별시의회-----

-----.

29. 여수시 주차장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 (생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② ----- -----

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u>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u>」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u>」 제4조----- ----- ----- ----- ----- ----- ----- -----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30.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 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2. (생략) 3. 여수시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u>전라남도</u>에 요구하는 사항 4. (생략)	제4조(지원 기준)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4. (현행과 같음)

31.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u>전라남도</u> 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32.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u>전라남도</u> 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여수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u> ----- ----- ----- ----- -----.

33.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u>전라남도</u>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 ----- ----- <u>전남광주통</u> <u>합특별시</u> -----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34.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u>전라남도</u>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35. 여수시 건축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②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자로서 <u>전라남도</u>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u> <u>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③ (현행과 같음)

36.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투자시설비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동 중인 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재난·화재로 인한 피해로 기업 도산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건물 신·개축이나 기계시설의 설치 등 피해	제17조(투자시설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복구에 사용한 지원 자금(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u>전라남도</u>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을 말한다)의 일정부분의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의 이자보전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를 여수시의 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 ---
--	---

37.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u>전라남도의</u>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